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3 년 5 월 27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트러스톤자산운용(주)
 (영문명) Truston Asset Management Co., Ltd.
 (홈페이지) http://www.trustonasset.com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, 10층 (여의도동)
 (전 화) 02-6308-0500

대 표 이 사 : 황성택, 김영호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이사
 (성 명) 김지숙 (전 화) 02-6308-0500

작 성 자 : (직 책) 차장
 (성 명) 임경윤 (전 화) 02-6308-0636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11-2-1호)

사외이사 중도퇴임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퇴임 사외이사 내역 | 성 명 | | 최종학 |
| | 임기 | 시작일 | 2012.06.15 |
| | | 만료일 | 2015.06.14 |
| 2. 퇴임사유 | | |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임명으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어 사임 |
| 3. 퇴임일자 | | | 2013.05.27 (중도사임) |
| 4. 퇴임 후 사외이사 현황 | 이사총수(명) | | 4 |
| | 사외이사총수(명) | | 2 |
| | 사외이사비율(%) | | 50% |
| 5. 대규모법인여부 | | | 부 |
| 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 | | - |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(중도사임 또는 해임 등)한 때 신고한다. 다만, 임기만료 전에 동일임원으로 재 선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주2) “사외이사비율”은 이사총수에 대한 사외이사총수의 백분율을 기재한다.
- 주3) “대규모법인여부”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기재한다.
- 주4)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5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

(제11-2-2호)

감사·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. 퇴임감사 (감사위원) 내역 | 구 분 | | 감사위원회 위원 |
| | 성 명 | | 최종학 |
| | 임기 | 시작일 | 2012.06.15 |
| 만료일 | | 2015.06.14 | |
| 2. 퇴임사유 |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임명으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어 사임 | | |
| 3. 퇴임일자 | 2013.05.27 (중도사임) | | |
| 4. 퇴임 후 감사(감사위원) 현황 | 감사수(명) | 상근 | - |
| | | 비상근 | - |
| | 감사위원 수(명) | 사외이사 | 2 |
| | | 비사외이사 | - |
| 5. 대규모법인여부 | 부 | | |
| 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 - | | |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이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(중도사임 또는 해임 등)한 때 신고한다. 다만, 임기만료 전에 동일임원으로 재 선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주2) “구분”은 상근감사, 비상근감사, 감사위원회위원 등 해당사항을 기재한다.
- 주3) “대규모법인여부”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기재한다.
- 주4)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5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